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김지완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2023. 11. 23.(목)

마약사건 제보자를 협박한 마약유통 폭력조직 엄단 - 검찰 직접 수사로 총 5명(1명 구속, 4명 불구속)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□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김보성)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 혐의 제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으로 오늘(11.23.) 기소(구속 1명, 불구속 4명)하였습니다.

- 교도소 수용중인 피해자 제보로 '23. 3.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하단파 부두목이 마약류관리에관법률위반(향정)으로 구속기소되자, 다른 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하단파와 그 연합세력인 영도파 조직원들이 서신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사건임

* 특가법 보복협박(제5조의9 제2항) : '1년 이상 유기징역'(벌금형 없음)

** 4명의 폭력조직원들은 다른 범죄로 수용 중이었으므로, 각 불구속 기소

□ 부산지검은 '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'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즉시 교정기관에 피해자 분리수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과 동시에, ①접견녹취록 분석, ②전국 4개 교도소·구치소 압수수색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서신 확보, ③사건관계인 13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것입니다.

□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마약·조직범죄 등 제보자를 보호하고, 수형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단체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쳐,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.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연번	소속조직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하단파	A (46세, 구속)	피해자의 제보에 따라 B*가 마약범위반(향정) 죄로 구속 기소되자, '23. 4.~6.경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 [특가범위반(보복협박등)]	'23. 9. 7. 기소
2		B (52세, 별건 수형중)		'23. 11. 23. 기소
3		C (44세, 별건 수형중)		
4	영도파	D (45세, 별건 수형중)		*B는 부산 폭력조직 하단파의 부두목임
5		E (43세)		

- * 하단파는 '90년대에 부산 사하구 하단 일대에서 결성되어 부산 일대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약 40명 규모에 이름
- ** 영도파는 '89년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결성되고 '15. 4.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유죄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폭력조직으로 처벌된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약 50명 규모에 이름
- ▶ 하단파와 영도파는 '90년대부터 초량동파 등과 함께 연합하여 부산 일대에서 마약 유통, 집단폭력 등의 범행을 자행하여 왔음

II 주요 수사 경과

- '23. 6. 마약사건을 제보한 피해자, 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
-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정기관에 피해자 독거수용 요청
- '23. 7. A, E 특가범위반(보복협박등)으로 인지,
하단파 부두목 B 접견녹취록 확보
 - ▶ B의 접견녹취록에서, B가 하단파 및 영도파 조직원들과 제보자의 진술 번복 및 필로폰 매수 범행 은폐를 위해 공모한 사실 확인
- '23. 8. 부산구치소, 창원·진주·화성교도소 등 압수수색,
A 특가범위반(보복협박등)으로 직구속

- '23. 9. 6. B 마약범위반(향정) 사건 1심 전부 유죄 선고(징역 3년)
- '23. 9. 7. A 구속기소, B 특가범위반(보복협박등)으로 인지
- ~'23. 11. ① 하단과·영도과 관련 마약사건 전수 분석, ② 접견 녹취록 추가 확보, ③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건관계인 13명 조사 등 검찰 직접수사

▶ 수사과정에서 제보자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법정 방청석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일명 '병풍'을 치려고 했던 정황 등을 확인

- '23. 11. 20. C, D 특가범위반(보복협박등)으로 인지
- '23. 11. 23. B, C, D, E 폭력조직원 4명 일괄 기소

※ 전체 피고인 5명 중 직구속 기소한 A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범행 인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정시설에서 수형·수감 중이었음

III

수사의 의의

1 마약유통 폭력조직의 집단적 사법방해 범행을 규명

-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마약·조직범죄의 고도화·침단화로 직접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,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까지 제한되자,
 - 마약·조직범죄의 핵심증거인 제보자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 및 범행 증가
-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방대한 양의 접견녹취록 분석, 전국 4개 수형시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 등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
 - 조직원들 간의 서신을 다수 확보함으로써, 전국 수형시설에 개별적으로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제보자에 대한 보복협박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하고, 마약유통 폭력조직의 사법방해 범행 전모를 규명

② 제보자를 집단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 '보복협박죄' 적용

- 하단과와 영도과 직원들은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, 핵심증거인 제보자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수습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, 제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

※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,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B에 대하여 1심 전부 유죄가 선고됨

- 이 사건은 제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중대 범죄로서, 피고인들을 특가법상 법정형이 중한 '보복협박'으로 의율*하여 엄중 처벌하였음

* 형법상 협박 : 3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
형법상 위증교사 : 5년 이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특가법 보복협박 : 1년 이상의 유기징역(벌금형 없음)

③ 마약범죄 제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조치

-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관련자 제보가 핵심적인 수사단서 및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, 제보자가 노출될 경우 폭력조직 등을 동원한 보복범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마약범죄의 제보자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
-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 제보자를 면담한 후 제보자의 독거수용 절차를 즉각 진행하여 제보자를 신속·철저하게 보호하였고, 출소한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
④ 검찰 직접수사로, 수형시설 내 폭력조직의 집단·보복 범죄행위 발본색원

-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수형시설 안에서 상호 긴밀히 연락(소위 '통방') 하며 제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를 협박하고,

-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방청석에 직원들을 도열(소위 '병풍')시켜 피해자를 협박할 계획까지 세웠던 정황이 확인됨

▶ 수형시설 안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방에 수용된 수감자들 사이의 의사 연락은 금지되어 있으나, 운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직원들끼리 의사소통한 사실이 확인됨

-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처벌과 교화가 이뤄져야할 수형시설 안에서 폭력 범죄단체의 보복범죄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,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수형시설 내 폭력조직의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였음

IV 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·조직범죄 등 제보자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, 수형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,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함으로써 폭력조직을 와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☑

[범행 개요도]

